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4. 9. 4(수) 10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
관한 조례안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94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·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미래유산 보존·활용 원칙(안 제1조~안 제3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.
- 다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5조~안 제6조).
- 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회의 운영 등(안 제7조~안 제11조).
- 마.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(안 제12조~안 제13조).
- 바. 미래유산의 선정 및 연구·조사, 취소(안 제14조~안 제16조)
- 사. 운영의 위탁(안 제17조).
- 아. 기록 및 홍보, 지원 등(안 제18조 ~ 안 제20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15조, 제16조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10조, 제22조의2조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다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2024. 8. 30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미래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, 미래유산 보존·활용 원칙(안 제1조~안 제3조).

- “금천구 미래유산“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함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.

-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,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규정함

3)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5조~안 제6조).

-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

4)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회의 운영 등(안 제7조~안 제11조).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5)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(안 제12조~안 제13조).

6) 미래유산의 선정 및 연구·조사, 취소(안 제14조~안 제16조)

-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함
- 금천구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함

7) 운영의 위탁(안 제17조).

8) 기록 및 홍보, 지원 등(안 제18조 ~ 안 제20조).

다. 검토 의견

- 금천구민의 삶의 역사를 간직한 유·무형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, 급속한 사회변화와 무관심 속에 멸실·훼손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.
따라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그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됨
-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총 4개의 장, 20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,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, 미래유산의 선정과 취소, 미래유산의 관리·운영, 행·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본 제정안은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취지에 충실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국가유산기본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20309호, 2024. 2. 13., 타법개정]

제15조(역사문화환경의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·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·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,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6조(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·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·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(古都)를 보존·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,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·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·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·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5. 2. 14.] [법률 제20286호, 2024. 2. 13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문화유산 기초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

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,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.

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조사·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2(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
2.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
3.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
5.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6.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